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615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0,394,700원, 지방교육세 13,165,420원, 농어촌특별세 16,456,7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 주식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의 순번 1, 2 '경정거부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01. 3. 20. 설립되어 부동산의 신탁 및 신탁부동산 개발을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2. 3. 22. 설립되어 건설업, 주택 및 택지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2013. 12. 16. C공사로부터 [redacted]구 D 일원 토지 16,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중 5,084.19㎡에 대하여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부지임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경된 세율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64,948,140원, 지방교육세 436,494,810원, 농어촌특별세 218,247,400원(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5,019,690,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 B가 감경된 세율을 적용한 위 5,084.19㎡ 내에 감경 대상이 아닌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토지 면적을 3,559.94㎡만 인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571,03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원고 B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2013. 12. 16.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고, 2016. 9.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등 연면적 158,198.59㎡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인 연면적 34,430.37㎡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경된 세율을,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67,460,670원, 지방교육세 318,140,600원, 농어촌특별세 397,675,750원 합계 6,283,277,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11. 29.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redacted]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1. 8. 법률 제16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 지정을 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표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내역(2016. 11. 29)

(단위: ㎡)

구분	총면적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소 계	당초 신고시 (지식산업센터)	경정청구 추가분 (추가지정분)	비 고
토지	16,357.00	7,662.04 (46.84%)	3,559.94 (21.76%)	4,102.10 (25.08%)	원고 B
건물	158,198.59	74,104.31 (46.84%)	34,430.37 (21.76%_	39,673.94 (25.08%)	원고 A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와 같이 신규 지정된 부분(이하 '신규지정분'이라 한다)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2. 19. 피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기납부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신규지정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제1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순번 1, 2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표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구 분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토지분 (원고 B)	당초신고	158,339,971,980	7,283,638,690	1,188,908,483
	경정청구	158,339,971,980	7,283,638,690	2,102,224,788
	증감액(합계)	-	-	913,316,305
건물분 (원고 A)	당초신고	223,112,523,834	7,050,355,730	767,078,700
	경정청구	223,112,523,834	7,050,355,730	1,651,284,460
	증감액(합계)	-	-	884,205,760

바. 한편, [redacted]시장은 2016. 8. 26. 원고 A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밀부담금 19,539,405,160원(이하 '이 사건 과밀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 A은 2017. 5.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이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고,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인 주차장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13,057,179,422원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redacted]시장은 2017. 6.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은 2017. 6.경 [redacted]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0), 위 법원은 2017. 12. 7. 원고 A의 두 가지 주장(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지정, 주차장 면적 산정 오류)을 모두 받아들이되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과밀부담금의 액수가 9,721,658,752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밀부담금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3,239,433,0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A 일부 승소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었다.

사. 원고 A은 위 바.항 기재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8. 12. 31. [redacted]시로부터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9,817,746,400원을 환급받았다.

[표 3] 이 사건 과밀부담금 환급결정에 따른 환급내역

환 급 사 유	환 급 액 (원)
주차장 면적 재산정	579,805,800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규지정	9,237,940,600
합계	**9,817,746,400**

아. 원고 A은 이 사건 과밀부담금의 환급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17. 피고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기 납부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6. 4. '주차장 면적 재산정'으로 인해 환급받은 과밀부담금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 A에 기 납부 취득세 등 합계 16,469,710원을 환급하였으나, 신규지정분으로 인해 환급받은 과밀부담금과 관련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제2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순번 3 참조).

[표 4] 이 사건 과밀부담금 환급에 따른 원고 A의 경정청구내역

	법정신고일	2016. 9. 30.		최초신고일	2016. 9. 7.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납부세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건물분 (취득)세	당초신고	223,112,523,834	6,247,150,660	679,689,990	5,567,460,670
		결정·경정신고	213,294,777,402	5,972,253,750	649,781,205	5,322,772,540
		증 감 액				△244,968,130
	(지방교육)세	당초신고	223,112,523,834	356,980,030	38,839,425	318,140,600
		결정·경정신고	213,294,777,402	341,271,630	37,130,350	304,141,280
		증 감 액				△13,999,320
	(농어촌특별)세	당초신고	223,112,523,834	446,225,040	48,549,285	397,675,750
		결정·경정신고	213,294,777,402	426,589,540	46,412,940	380,176,600
		증 감 액				△17,499,1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취득세 감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아야 하는 시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해당 부동산 취득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법령상 요구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에 필요한 운영계획서, 건축계획서 등 각종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도저히 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과 필요서류를 갖출 수 없는바, 부동산 취득 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만을 감경 대상으로 본다면 적어도 토지에 관한 한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제2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과밀부담금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관련 확정판결에 의해 환급된 부분은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제1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연혁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먼저 지정을 받은 후 비로소 감경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 12. 31.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문언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은 본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에 있던 것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으로 옮겨온 것인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원래 이 사건 규정과 달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1]. 종래 '지정하는'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규정에 들어와 '지정된'으로 변경된 것이다.

구 지방세법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위 제276조 제3항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제276조 제1항, 제277조 제2항, 제280조 제3, 4항), 그 각 규정에서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각 '지정된' 또는 '지정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반하여 제276조 제3항에서는 굳이 '지정하는'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편입되면서 앞서 본 규정들에서 사용된 '지정된'이라는 표현으로 변경,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연혁을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과 달리 된 것에 취득세 등 감면 요건을 변경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고

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감면 대상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2014두35942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등은 이 사건 규정과 입법취지, 문언, 체계, 연혁 등을 달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원고들은 취득세 납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서 당연히 감면세액 상당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취득세 등 감면의 대상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원고의 주장대로 하면 취득 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업자라도 취득 후 위 지정을 받기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장해가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감경을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사후추징규정을 적용해 감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개발·조성에 상당한 기간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개발·조성까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본문에 있는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 발생할 문제점을 단서에 있는 사후추징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위 주장은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맞지 않고, 조세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이나 조세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 않다.

라) 구 벤처기업법 및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600㎡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벤처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하여야 하고(같은 시행령 제11조의8 제2항),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그 외 면적에는 지원시설, 기업업무활동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시설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 3호, 같은 시행령 제11조의8 제3, 4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갑 제14호증)에 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에 해당됨(연면적 600㎡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갑 제15호증)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9 제1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9. 7. 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그리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2015. 9.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구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서류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항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제1호)와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제2호),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제3호)를 들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서식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시설·장비 현황, 유치계획, 입주 기업 지원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첨부할 건축계획서 등 필요서류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취득 전에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이 아닌바, 원고 B는 늦어도 2013. 10.경에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구비한 뒤 2013. 12.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1, 2호증), 그 밖의 서류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12. 16. 전에 모두 구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들보다 앞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있었던 [redacted]시 [redacted]구에 위치한 E 내 벤처기업 중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먼저 지정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존재한다.

마) 이 사건 규정 중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경우 그 개발·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규정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원고 A의 제2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제5항 제3호는 '법인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간접비용 중 하나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를 들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나) 구체적 판단

(1) [redacted]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원고 A에 부과한 이 사건 과밀부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16. 9. 1.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참조), 그 후 2018. 12. 13.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확정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31.에는 [redacted]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기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과세표준 산정 시 산입되어야 할 간접비용의 일부가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취소된 것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2019. 4. 17.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라는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50조가 정한 경정청구기간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이나 그 후 이 사건 과밀부담금 중 일부가 환급된 사정은 취득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제시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매매계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 감액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신규지정분 관련 환급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제2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제2경정거부처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별지 1]

목 록

순번	원고	거부처분일	세목	경정거부 세액(원)
1		2018. 4. 2.	취득세	783,473,460
			지방교육세	44,769,910
			농어촌특별세	55,962,390
	합 계			884,205,760
2		2018. 4. 2.	취득세	794,188,090
			지방교육세	79,418,810
			농어촌특별세	39,709,400
	합 계			913,316,300
3		2019. 6. 4.	취득세	230,394,700[1]
			지방교육세	13,165,420[2]
			농어촌특별세	16,456,770[3]
	합 계			260,016,890

끝.

[1] 당초 경정청구세액 244,988,130원 – 피고 경정세액 14,593,430원
[2] 당초 경정청구세액 13,999,320원 – 피고 경정세액 833,900원
[3] 당초 경정청구세액 17,499,150원 – 피고 경정세액 1,042,3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2010.1.1>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12.31, 2010.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31.>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1. 5., 2005. 12. 31.>

③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9. 5. 13.>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다. <개정 2005. 1. 5., 2005. 12. 31., 2009. 5. 21.>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12. 31., 2007. 4. 11., 2009. 5. 21.>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1. 5., 2005. 12. 31.>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1. 5., 2008. 12. 31.>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9. 5. 13.>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 및 제6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1. 8. 법률 제16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5. 11. 18.>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9. 7. 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2015. 9.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5.6.30, 2016.4.26, 2017.7.26>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31, 2016.8.31, 2016.12.30>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26>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3.6.28, 2015.6.30, 2016.4.26>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2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1.>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